

5-3.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지원 대상

- 2025년 12월 31일까지 <5-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¹⁹⁹⁾에 출자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²⁰⁰⁾

지원 내용

- 공제액

$$\text{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times \frac{\text{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²⁰¹⁾$$

-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유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대상
- 농어촌특별세 과세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11

전년대비 달라진 점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19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200)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제외

2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